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3. 1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3월 17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 의결안건 제108호 미참여(제척안건)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5시 3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1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7호 『에스비자산관리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8호 『엔피엘홀딩스자산관리대부(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9호 『(주)피앤씨인베스트먼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0호 『(주)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1호 『명헌건설(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2호 『(주)미전개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3호 『(주)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4호 『(주)이화에이엠씨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6호 『에스디산업(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과 금융위원회 가계

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에스비자산관리대부(주) 등 9개 대부업자가 총자산한도를 위반하여 기관경고 또는 영업전부정지를 처분하는 내용

○ (위원) 지난 1월에 전체를 다 '3개월 영업전부정지'로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논의하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보류했던 안건인데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수정안을 논의한 것 같음.

○ (위원) 이 경우에는 수정의결인지?

○ (참가자) 수정의결임.

○ (보고자) 이 건은 원안이 유지되는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조치수준이 변경된 4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0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계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 지난해 11월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따라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대부업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 후 3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것을 7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3월17일인데 국무회의까지 3개월 뒤에 시행하려면 시간이 충분한지?
- (보고자) 사실 조항은 간단하게 한 조항이어서 법제처와 얘기는 되어 있고 3월30일에 국무회의에 통과하는 것으로, 이 자제한법 시행령과 같이 의결될 예정임.
- (위원) 그러면 3개월 뒤는 6월30일인데 하루 차이로 빠듯해보임.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지금도 금리가 24%로 이렇게 높은 금리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가끔 흑자는 24%를 20%로 인하하면 제도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 제도금융권에서 24%를 하다가 20%로 낮추라고 하면 그래도 대출로 가용한 자금은 정해져있는데 대출로 가용한 자금은 전부 20% 이내로 들어오는 것 아닐지? 그런데 어떤 자료들을 보면 금리를 조금 낮추면 일부는 비제도권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분석이 있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됨. 이 사람은 20%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대출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어떤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말씀하신 대로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지만 27.9%에서 24%로 낮췄을 때도 한 13% 정도는 일부 금융이용이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음. 2020년 3월말 현재로 분석해봤을 때 20% 초과대출 이용자가 239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3% 정도는 금융이용을 자발적으로 축소하시는 분도 있고 채무조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중에 한 4만 명 정도는 불법사금융 쪽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음. 그런 우려사항을 대응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같이 준비 중임. 3월말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도 같이 발표해서 곧 시행할 계획임.
-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숫자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24%에서 20%로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대출이용을 축소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임. 금리와는 관계없이 어떤 시기에 대출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안 빌렸거나 아니면 돈이 생겨 갚아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대출이 축소된 것이지, 금리를 낮춰서 축소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임. 금리 낮춘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제도권 이용의 축소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큰 충격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시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이용자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면 수익성이 안 나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1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에 있어서 법 의결이 필요함.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필요성을 설명하려 법사위에 참석하여 금융위에 결석하였음. 양쪽 의견을 잘 들어서 피해가는 사람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음.
-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언급하시긴 했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용위험을 걱정할 것이고, 24%에서 20%로 내려가면 신용비용이라고 해야할지, 그것이 조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음. 충분히 이쪽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듯함.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절히 보고 균형 잡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 사실 금융권과는 다 협의가 되어서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 같음. 어쨌든 오늘 의결해 주시면 잘 해나가도록 하고, 7월1일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의결안건 제107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0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8호 『예금보험공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0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공사 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

○ (위원) 지금 리스부채가 191억 원이 들어가면서 리스부채가
커져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그렇
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쪽 그렇게 된 것인지?

○ (보고자)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음.

○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마이너스 자본이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특별회계는 따로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예금보험공사도 정부 공공기관인데 자본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이 생소해서, 건전성은 괜찮은 것인지?

- (보고자) 예금보험공사의 회계는 기금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 기말 시점 미사용한 금액은 다시 기금회계로 환입정산하는데, 회계처리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이 마이너스로 보이는 효과가 있음. 실제 예보기금을 포함한 공사 고유사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임.
-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지 아니면 자본을 늘려서 그것을 플러스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쭙보는 것임.
- (보고자) 회계상 자본잠식은 문제될 소지가 적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인지? 아니면 기재부 소관인지? 공공기관 관리 운영은 기재부에서 보는 것인지?
- (보고자) 회계는 금융위 소관임.
- (위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 14억 원이 발생했는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당기순이익은 기금전입수익 등의 총수익에서 예산에 따른 지출과 회계적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인 1,136억 원을 빼고 14억 원이 남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

음. 예보기금으로부터 전입 받고 운영되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인 현 상황에서도 회계법인인 지금까지 계속 적정의견을 내왔음.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없게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 (위원) 그것을 금융위에서 할 것인지, 기재부에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이 조금,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금융회사들한테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경영개선 계획을 내라고 하는데 정작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간다는 것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따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9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
○○○○(주)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0호 『CD 금리의 금융거래 중요지표 지정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CD 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의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내용

○ (위원) 지난번에 RP 금리를 지정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보고자) 이달 초에 발표한 국채·통환채·RP를 기초로 한 무
위험 지표금리도 사실은 이 지표법에 따른 CD 금리를 장기
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임. 다만, 지금 현재 거래
중단의 가능성 때문에 금융거래지표법과 CD를 먼저 지정해
놓고 금년 중에 RFR도 공시가 되면 이 법에 따라서 다시
지정을 한 후에 장기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임.

○ (위원) CD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RP를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1호 『농협은행(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농협은행(주)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확인된 ‘실제 자금을 수취
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기
관 및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지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재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의 예정금액 산정방법에 따르면, 금번 위반행위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결과’를 ‘중대’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당해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금융거래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위반결과’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반결과’를 ‘보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 (위원) 동 조치안의 결론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금융기관검사 및제재에관한규정」의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은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결과’와 ‘위반동기’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면서, 그 중 ‘위반결과’를 ‘중대’, ‘보통’ 또는 ‘경미’로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과태료 산정시 적용할 ‘위반결과’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금번 조치안의 경우, 금감원은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시에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그 중간인 ‘보통’으로 평가했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어떤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평가와 ‘경미’하다는 평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한 동시에 ‘경미’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이러한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방법은 은행 등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음. 향후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시 오늘 지적된 사항을 감안하고, 바람직한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방법을 검토 후 제도개선 시 반영하여 주길 바람.

- (보고자) 현행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예정금액 산정방법'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금융위원회 논의시 지적하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의 지점 등 설치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원 연대책임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년 4월 사모펀드 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작년 4월 사모펀드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법안이 어제 법사위에 통과되었음. 그래서 4월에 발표한 대책이 법은 어제 가고 시행령이 가고 규정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임

○ (위원) '일정기간(예: 6개월) 이상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미달 시 검사·제재심 없이 즉시퇴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미달 시 즉시 퇴출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음. 그다음에 '펀드운용시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투자자의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차입 가능성 그리고 최대차입한도 및 위험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음. 왜냐하면 TRS가 기초자산 같은 것이 복잡하고 TRS가 엮여 있으면 차입가능성, 차입한도 가지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담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등록말소제도는 사모펀드 제도가 기본적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를 목적으로 한 제도인데 사모운용사의 등록(진입)은 굉장히 손쉽게 되고 또 등록폐지(퇴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자기자본이나

인력요건처럼 정량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검사나 제재심 없이 즉시 신속하게 퇴출되는 것임. 투자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거나 투자자 보호에 미비점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검사나 제재심이 없이 퇴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등록말소제도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는 부분은 작년 4월에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설명자료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했고 최대차입한도나 차입을 통한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때 제공되는 투자설명자료에 반영이 되고 있음.

- (위원) 금감원,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보고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음.
- (위원) 두 번째 관련해서 투자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명 또는 기술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음. 그렇게 해야 운용사나 증권사에 부담을 지우는 의미가 있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위규정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서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함.
- (보고자) 작년에 판매사와 T/F를 해서 금감원에서 투자설명자료 표준안을 굉장히 상세하게 마련해서 작년 12월에 배포하였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혹시 미비점이 있는지 보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4호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해 투자중개업 폐지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위원) 지금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라는 실체는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중개업만 폐지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면 무엇이 남는 것인지?

○ (보고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이 남아있게 됨.

○ (위원) 그러면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줄어들어서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작년, 올해 증자를 해서 자금여유가 있는 상황임.

○ (위원) 자산운용사들의 경우도 최소자기자본 적립의무를 위

반하게 되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됨. 계획을 명령하고 불승인하여 재명령을 하고 또 계획을 받는 등의 지난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전문사모라든지 라이선스와 등록제도를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금융위 실무자들과 금감원도 잘 협의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5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위원) 관계 행정기관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일반적인 병원이 들어가는지?

○ (보고자) 다 들어감.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6호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투자증권(주)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7호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8호 『(주)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비바리퍼블리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7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9호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 (위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향후 법 집행과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 실무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함. 금감원 실무자들이 안 계신데 금융위 실무자들께서 금감원에 전달해 주시기 바람.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기는 의미 있는 법이며, 금융소비자보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거꾸로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잘 안착되려면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함.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음. 사실상 3월25일까지는 오늘부터 열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

력해 주시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서는 3월 25일부터 바로 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것임. 그래서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 요구 불이행은 철저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6개월 정도 비조치로 하고, 지도,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6개월간 컨설팅 한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수용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두 번째는 반대로 소비자들한테는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의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금융당국 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이라든지 감독에 엇박자가 발생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서 직원들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화를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림.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1호 『금융위원회 음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ombudsman의 2020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4분 폐회)